

2024.03.04. 경제민주주의21 국민제안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현황 및 문제점

○ 가상자산 발행사업자들은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1)재무상태표상에 수익으로 기록되고 2) 코인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점 때문에 제3자에게 이전해서 현금화해왔음.

- 제3자에게 이전하는 명목은 '투자'와 '용역비 지불'이며, 이것을 업계에서는 '사용'이라고 부름.

○ 이러한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므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사용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1.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 공표하기
2. 상장회사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기

내용

1.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 공표하기

가상자산 발행사업자는 자기가 발행한 코인의 미유통 분량에 대해서는 (해당 코인이 시장에 거래되어 시가가 있더라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음. 코인의 '사용'으로 보유분량이 줄어들더라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코인을 제3자에게 '사용'하면 시가상당액의 '처분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사료됨.

세금의 발생은 1)회사에 직접 재무효과를 발생시키고, 2) 처분수익에 대응하는 대가가 없을 경우 배임 문제가 되는 중요 사항임. 그럼에도 자기발행 코인의 사용은 재무제표상 숫자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의 자기 발행 코인 사용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원칙적 기준을 공표해야 함.

2. 상장회사의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많은 상장회사가 코인을 발행한 후 '사용'을 통해 밖으로 빼돌려 현금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코인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최근의 일이고 코인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음.

기대효과

1. 세수확보
2. 배임적 코인 사용 적발 및 추가발생 예방
3. 주주의 권리 보호